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적선동 꽃기린선인장 2020〉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별기고 | 퇴직급여의 분할에 관한 판례의 경향

10 • 특집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31

26 • 가정폭력상담실

28 • 어떻게 할까요

30 • 결혼과 인생(214) 영화이야기

배드 지니어스 김용언

32 • 좋은 책

시선으로부터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그래도 삶은 계속 됩니다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하는 상담소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상담소 또한 상담소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세상의 변화에 직면하여 그 상황에 적응해 가야 했습니다. 2월 25일 서울가정법원의 재판 연기와 휴정에 맞추어 출장상담이 임시 중지 되었고, 26일부터는 영등포구청의 권고에 따라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상담 또한 임시 중지 되면서 전화 및 인터넷 상담만 가능해졌습니다. 전화와 인터넷이라는 랜선 창구는 열려 있었지만 가정문제라는 특성 상 대면상담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가지 걱정이 컸습니다.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주부, 직장인, 학생, 어린이 등 가족구성원 전체가 준비 없이 오랜 시간 집안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고 이는 본의 아니게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마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묻어두었던 갈등도 터져 나오기 마련인데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는 등 가정의 문제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마저 찾을 수 없다면 상담소의 도움을 원하는 이들을 어

찌할 것인가 심려 되었지만 한 편으로는 상담소 구성원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조금의 방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면서 살얼음판을 지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상담소의 구성원들은 전화나 인터넷 상담 등에 충실 하는 한 편 그간 미루어두었던 일들을 해내며 면접상담이 그친 시간들을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늦은 봄 4월 말에 이르러서야 손 소독, 체온측정, 문진표 작성 등의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상담소와 서울가정법원의 출장상담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에 다시 면접상담을 중지해야 했고 9월 15일이 되어서야 재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대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포지엄 등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담소 뿐 아니라 사회 전체 아니 지구촌 전체가 겪는 일이었기에 불평불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심포지엄 등은 진행할 수 없었지만 비대면으로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진행 하였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던 출장상담 역시 랜선으로 전환해서 진행했으며, 1964년부터 해 오던 법률임상실습도 방역지침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여 조심조심 시행해 나갔습니다. 뿐 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 설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전 지부들과의 업무협약 문제도 원활한 해결을 봤습니다. 한 편으로 아쉽게 진행하지 못한 비혼모 프로그램 등을 대신해서는 동영상과 만화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 비대면의 시대를 맞아 상담소도 유튜브에 진출하여 이 시대의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면접상담을 못한 시기가 아쉽고, 가족문제의 현안을 함께 연구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지 못한 점도 미련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비혼모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애타게 기다리는 캠프 등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과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소되어 예년처럼 가족문제로 상심이 큰 모든 이들이 거리낌 없이 상담소를 찾고, 그들의 문제를 모아 심포지엄도 열고, 부부캠프나 비혼모 가족을 위한 캠프도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대를 보내며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또 충분한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기가 오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보다 더 좋은 방안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노심초사하며 긴장과 스트레스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라는 소식이 희미하게 있지만 아직은 확실한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가득한 한 해에도 여전히 상담소에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 이 어둠의 시기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넘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퇴직급여의 분할에 관한 판례의 경향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우리사회는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노후 생활 보장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이혼 후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선고되었는데, 이러한 경향 역시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례없이 빠른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연금분할에 관한 일반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최근 판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이전 판례의 태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남편이 혼인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통하여 남편의 근로를 뒷받침하는 경우 남편이 받는 임금이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논리와 같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 시 다른 일방이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는 처음부터 의문이 없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그러나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종래의 판례는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2. 판례의 변화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었으며, 이제 장래의 퇴직금(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

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 시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분할권리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었다(당시 공무원연금법 제32조(현행 제39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혼배우자는 전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3. 최근 판례의 분석

(1) 퇴직급여채권의 분할

법원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여러 사정(혼인생활의 경과와 기간,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제45조)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대판 2019. 9. 25, 2017므11917). 퇴직급여채권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청산, 분배한 경우에는 이혼배우자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예를 들어 공무원 A와 배우자 B가 이혼할 때 A의 적극재산 3억원에 A의 퇴직급여채권 1억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각각 2억원씩 분할하였다면, 그 후 세월이 흘러 A가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해도 B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에 퇴직급여채권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배우자(분할연금청구권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등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것,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것, 분할연금청구권자가 65세에 이르렀을 것¹⁾)이 갖추어 졌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위의 예에서 A와 B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이혼할 때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세월이 흘러 A가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B가 65세에 이르면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금분할의 비율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²⁾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균등분할의 원칙.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이외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4항도 균등분할의 원

1) 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분할연금청구권자가 60세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1호.

2) 혼인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된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현재결 2016. 12. 29, 2015헌바182 참조.

칙을 정하고 있다).³⁾ 다만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따라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⁴⁾ 예를 들어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공무원인 갑과 배우자 을의 퇴직연금 분할비율이 6:4로 결정된 경우, 그 후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때부터 3년 내에 을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갑과 을에게 각각 이 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갑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내내 을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갑의 퇴직연금액이 월 300만원이라면 갑에게 180만원, 을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하려면 반드시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 후 세월이 흘러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한 때에도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5조 제2항(균등분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만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협의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839조의2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인데, 제83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취지이므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기 위한 청구도 제839조의2 제3항에 의한 제척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연금분할 비율에 대하여 정할 것을 청구하지 않아서⁵⁾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다면 세월이 흘러 이혼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권이 발생하였을 때 그 비율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균등분할이 될 것이며, 장래 발생하게 될 연금의 균등분할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배우자는 미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협의나 재판을 통하여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분할연금청구권의 제척기간

부부의 일방이 이혼 시 아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사람은 전 배우자가 연금을 지급

3) 예를 들어 갑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중 전 배우자 을과의 혼인기간은 20년에 이른다고 가정해 보자. 갑이 퇴직한 후 월 300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을은 혼인기간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 200만원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인 100만원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다.

4)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다르게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다르게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지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즉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른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혼배우자에게 균등한 비율의 분할연금 지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5)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839조의2 제3항).

받기 시작하고 본인(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 분할연금청구권자)이 65세에 이르면, 그 때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후 10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일 수도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 국민연금법(제64조)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시에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청산,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세월이 흘러 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등 위에서 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분할연금 수급권의 적용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는 위에서 본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이 규정은 개정법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법률 제15523

호, 2018. 3. 20.).⁶⁾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것), 제3호(이혼배우자가 65세에 이르렀을 것)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5조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예를 들어 퇴직공무원인 갑과 배우자인 을이 2015년 5월 1일에 이혼한 후 2016년 5월 1일에 퇴직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을이 법원에 퇴직연금의 분할을 청구하여 연금의 분할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갑이 매월 연금 전액을 수령한 후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분할금액을 을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갑과 을이 2016년 5월 1일에 이혼하였다면, 갑이 이미 이혼 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도 을이 60세에 이르면 갑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제42조 제1항)도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1항. 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에 관한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1998년 개정법률 제57조의2 제1항. 현행 제64조), 부칙 제10조(법률 제5623호, 1998. 12. 31.)에 따르면 1999년 1월 1일 개정법을 시행 전에 제5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 사유(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호-4호 생략)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법을 시행일 이후의 노령연금 급여분부터 개정법률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 수급권은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특 집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 혼인 금지한 민법 제80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 열어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지난 11월 12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민법은 제809조 1항에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15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근친혼을 '혼인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석 달 여 후인 같은 해 8월 "A씨와 나는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신고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를 하면서 "민법 제809조 1항과 제815조 2호는 위헌"이라며 현재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

는 '8촌 이내 혈족'의 범위가 입법목적이나 외국 입법례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지 △오늘날의 친족관념이나 가족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혼인의 자유, 특히 혼인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1997년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근친혼 금지 제도로 전환되면서 친족관념이 변화하고 있고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문제와 맞물려 가족 형태에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친족의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 한다.

이 날 공개변론에서 A씨 측 참고인으로 의견을 낸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견해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 ①

-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 * *

현 소 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I. 쟁점: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혼인의 자유, 특히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다.¹⁾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은 스스로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자기운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데, 혼인에 있어서 자기운명결정권이란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와 언제 혼인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동성동본금혼 사건에서 혼인의 자유와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²⁾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기본권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적절한 입법권의 행사를 통

해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보호하고, 그 제도의 최소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 사건³⁾, 중혼 청구권자 사건⁴⁾ 등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 근친혼에 대한 금기(taboo)가 존재해온 것, 그리고 각국의 혼인법이 이러한 금기를 도덕의 영역에 맡겨두는 대신 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가까운 친족과의 혼인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분명 그 사회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해가 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정한 범위 내의 근친혼 금지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舊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동성동본금혼 제도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법자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혼인과 가족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누린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아무리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반하는 것일 수는 없다.⁵⁾ 가족제도가 역사적·사회적 산물(또는 전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⁶⁾

* 본 논문은 2020. 11. 12.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의 공개변론 참고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논문 형태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개선방향에 대해 훌륭한 식견을 제공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편집자 주) 참고문헌은 생략하였음.

1) 헌법 제10조로부터 혼인의 자유가 도출된다고 보는 견해로 尹眞秀, “婚姻의 자유”, 民法論攷 IV, 博英社, 2009(初出: 제1회 韓國法學者大會 論文集(II), 한국법학교수회, 1998), 181면; 헌법 제36조로부터 혼인의 자유(특히 배우자 선택의 자유)가 도출된다고 보는 견해로 李瀾培, “同姓同本不婚에서 近親婚禁止로의 改正 -民法 제809조 제1항의 憲法不合致決定과 관련하여”, 家族法研究 第12號 (1998), 231면 참조.

2) 헌재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판례집 9-2).

3) 헌재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결정(판례집 14-1).

4) 헌재 2010. 7. 29. 선고 2009헌가8 결정(판례집 22-2상).

5) 입법 형성의 자유가 헌법적 이념과 가치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재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등 결정(판례집 17-2) 외 다수.

6) 헌재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판례집 17-1). 그밖에 전통과 헌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尹眞秀, “憲法·家族法·傳統”, 민

따라서 근친혼은 혼인과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초적 생활 단위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제도적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근친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누구와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부터가 개인의 혼인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어느 범위의 근친혼 금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본질적 요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근친 간의 혼인이 금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현행 민법상 근친혼 금지 규정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의 혼인할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때 근친혼은 혈족 간의 혼인과 인척간의 혼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을 혈족 간의 혼인으로 한정한다.

II. 근친혼 금지와 제도적 보장

1. 근친상간과 근친혼

혈족 간의 근친상간은 신화의 원형(元型) 중 하나이다. 그리스 신화는 '카오스'의 딸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아버지인 '카오스'와 동침하여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고, 다시 아들 '우라노스'와 동침하여 '크로노스'를 비롯한 12명의 티탄 신을 출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창세신

화에서는 '태호 복희'가 누이동생인 여신 '여와'와 동침하여 인간을 낳는다. 창세기에는 '룻'이 두 딸과 동침하여 자손을 낳아 모압족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전세계의 신화가 근친상간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구의 숫자가 적고 이동이 드물었던 시대에 가까운 혈족 간의 근친상간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의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인류가 계급사회로 진화하고, 혼인 제도가 공식화됨에 따라 근친간의 혼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근친혼은 같은 신분을 가진 친족들끼리의 혼인은 그 계급의 순혈성(純血性)을 유지하고,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며, 가산(家産)의 분산을 막아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⁷⁾ 우리나라 역시 신라 시대에 골품제의 유지를 위해 근친혼이 만연하였다.⁸⁾ 가령 김유신은 김춘추와 자기 여동생인 김문희 사이에 태어난 딸, 즉 조카와 혼인하였으며, 진성여왕은 경문왕의 동생, 즉 삼촌과 혼인하였다. 이집트에서도 왕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이 성행하였는데, 가령 제18왕조의 아멘호테프 4세는 자신의 장녀와, 하트셉투트 여왕은 이복형제와 혼인하였으며, 클레오파트라 역시 남동생과 혼인하였다. 4세기 무렵 전후의 유럽에서도 숙부와 질녀 간의 혼인이 종종 관찰되는데, 이는 형제들 사이에 분배되었던 세습재산을 재통합하기 위한 상속전략이었다.⁹⁾

특히 봉건사회에서 왕가(王家)의 근친혼은 왕권 강화에 기여하고, 귀족의 정치세력화(外戚勢道)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려 시대에 왕실 내에서 근친 간의 혼인이 반복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었다.¹⁰⁾ 가령 태조 왕건은 29명의 후비로부터 25남 9녀를 얻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이복남매끼리 혼인하였으며, 광종은 이복동생과 조카

法論攷 IV, 博英社, 2009(初出: 憲法論叢 第15輯, 2004) 40-87면; 尹眞秀, “傳統的 家族制度와 憲法 - 최근의 憲法裁判所 判例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2호(2006), 149-188면; 정구태,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小考 - ‘전통’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 慶熙法學 제45권 제4호(2010), 55-94면 등 참조.

7) Robert Battes, *Eherecht*, Springer, 2018, S.87; 이종서, “11세기 이후 금혼 범위의 변동과 그 의미”, *사회와 역사* 제64권(2003), 48면

8) 김갑동, “고려왕실에는 왜 근친혼이 있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5호(2001), 12면; 김창현, “고려시대 간통과 그 성격”, *여성과 역사* 제28권(2018), 102면; 신수정, “고려시대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위상 변화”, *여성과 역사* 제23집(2015), 146면; 이종서(2003), 48면; 李熙培(1998), 223면; 崔幸植, “同姓同本不婚 및 近親婚禁止를 둘러싼 問題”, *원광법학* 제14집(1997), 124면.

9) 강일휴, “서양 중세의 근친혼 금지”, *史叢* 第54輯(2001), 78면.

10) 김갑동(2001), 8면; 신수정(2015), 145면;

를 모두 비(妃)로 삼았다.¹¹⁾ 중세 유럽에서도 왕실이 가문의 유지와 세력 확대를 위해 사촌지간 그밖에 가까운 친족 간에 혼인하는 예가 흔하였다.¹²⁾ 가령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 최고의 황실 가문으로서 거듭되는 근친혼을 통해 몇백 년간 유럽 전역의 왕실과 혈족·인척 관계를 유지하였다.¹³⁾

2. 근친혼 금지 규범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근친상간 내지 근친혼에 대한 금기 역시 오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1750년 함무라비 법전은 아버지가 딸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방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화형에 처하였다(함무라비 법전 제154조 및 제157조). 유대에서도 율법이 확립된 레위기 시절에 이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숙질간의 혼인을 금지하였으며(레위기 제18장 7절 이하), 로마는 시대에 따라 근친혼의 범위가 변동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3촌 내의 혈족간의 혼인은 초지일관 금지하였다.¹⁴⁾ 중국은 주나라 시절부터 동성불혼의 원칙이 등장하였다(춘추좌씨전 양공 28년). 위와 같은 고대법의 예만 보더라도 근친혼이 금지되는 범위는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 그 태도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혼인법체계가 완비된 이래 부모-자녀 간의 혼인이나 부모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현상은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아래의 비교법적 검토가 그 보편성을 증명한다.¹⁵⁾

(1)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국가

가. 독일

독일은 오로지 직계혈족¹⁶⁾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을 금지한다(독일 민법 제1307조). 이때 형제자매에는 부모를 모두 같이 하는 형제자매(同姓同腹)와 부모 중 한쪽만 같이하는 형제자매(同姓異腹 및 異姓同腹)가 모두 포함된다. 3촌 이상인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과거에는 같은 조문에 의해 직계인척 간의 혼인도 금지되었으나, 1998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¹⁷⁾ 위 조문은 입양으로 직계혈족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양친자관계라도 입양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혼인할 수 있다(동법 제1308조 제1항). 또한 입양으로 형제자매가 된 자는, 아직 입양 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면제 재판을 받아 혼인할 수 있다(동법 제1308조 제2항).

11) 그밖에 고려 왕실 내의 근친혼 행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갑동(2001), 5-7면; 신수정(2015), 145-160면; 이종서(2003), 48면; 이창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民族文化論叢 第46輯(2010), 109면; 이화형, “섹슈얼리티로 본 한국 전통여성의 주체적 삶의 양상”, 동아시아고대학 제38집(2015), 166-167면; 정금식,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2017), 147면; 최봉준, “원간섭기 근친금혼 관념의 강화와 수계혼(收繼婚) 도입 시도”, 역사와 현실 제99호(2016), 97면; 허홍식, “고려시대의 근친혼과 일부일처제”, 역사비평(1994.5.), 82-83면;

12) 강일휴(2001), 78, 83면.

13)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전적 소인인 주걱턱은 현재까지도 ‘합스부르크의 턱(Habsburg lip)’이라고 불리면서 과도한 근친혼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4) 강일휴(2001), 77-78면.

15) 인척간의 혼인금지 조항에 관한 검토는 생략한다. 근친혼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윤진수,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170-2호(2019), 265-266면. 金壽壽, “同姓同本不婚制度에 관하여”, 家族法研究 創刊號(1984), 13-15면; 李瀾培(1998), 222면 및 각주 16); 崔幸植(1997), 132-133면도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주로 개정 전의 태도이다.

16) 직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국가는 다시 ① 부모-자녀 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경우, ② 조부모-손자녀 간의 혼인까지 금지하는 경우, ③ 촌수 제한 없이 모든 직계존비속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나,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직계혈족’ 간의 혼인 금지로만 표현하였다.

17) 직계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의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尹眞秀, “婚姻成立에 관한 獨逸 民法의 改正에 관한 考察”, 서울대학교 法學 제40권 2호(1999), 246면 참조.

독일 민법 제1307조에 위반한 혼인은 부부 중 일방 또는 관할 행정 관청의 청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동법 제1316조 제1항 제1호).¹⁸⁾ 따라서 근친혼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혼인 취소 후에도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또한 취소로 인해 부부 중 일방 또는 자녀에게 중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동법 제1316조 제3항).

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을 금지한다(오스트리아 혼인법 제6조). 이때 형제자매에는 부모 양쪽을 같이 하는 경우와 부모 중 한쪽만 같이 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3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양친자 간에는 입양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혼인이 금지된다는 점도 독일과 동일하다(동법 제10조). 다만, 오스트리아는 입양 관계의 해소 여부를 불문하고 입양에 의해 형제자매가 된 자 사이의 혼인을 언제나 허용한다는 점에서 독일과 차이가 있다(동법 제6조 및 제10조).

오스트리아 혼인법 제6조에 위반한 자연혈족 간의 혼인은 무효이나(동법 제25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당연무효설’¹⁹⁾과는 차이가 있다(동법 제27조).

다. 스위스

스위스 역시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을 금지한다는 점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동일하다(스위스 민법 제95조 제1항). 이때 형제자매에는 부모 양쪽을 같이 하는 경우

와 부모 중 한쪽만 같이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3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입양으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도 혼인을 금지한다(동법 제95조 제1항). 특히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혼인뿐만 아니라, 입양으로 형제자매가 된 자 간의 혼인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와, 법원에 의한 면제 판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과 차이가 있다.

스위스에서도 근친 간의 혼인은 무효 사유이나(동법 제105조 제3호), 오스트리아와 동일하게 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동법 제109조 제1항).

(2) 3촌 이내 방계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국가

가. 프랑스

프랑스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숙질(叔姪)²⁰⁾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프랑스 민법 제161조 내지 제163조).²¹⁾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숙질 사이의 혼인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164조). 4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녀 및 양자녀의 직계비속 사이, 동일한 양부모에 의해 입양된 형제자매 사이, 양부모의 친생자녀와 양자녀 사이에 혼인이 금지된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입양으로 형제자매가 된 자 사이의 혼인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366조).

위 규정에 반하는 근친혼은 배우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혼인 무효 판결이 선고된 때 효력을 상실하며, 그 청구는 혼인 성립 후 30년 내에만 가능하다(동법 제184조).

18) 한때 독일 민법은 근친혼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혼인을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였으나, 1998년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제도를 통합하면서 이를 혼인취소 사유로 변경하였다. 조은희, “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 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국제법무 제9집 제2호(2017), 247-248면 참조.

1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은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당연무효설을 택한 바 있다.

20) 이하 ‘숙질’에는 숙부-질녀 간의 관계와 숙모-질 간의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1) 이하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외에 숙부와 질녀·숙모와 질 간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식의 촌수계산에 따른 3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근친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제에서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표현하였다.

나. 영국

영국 역시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숙질(叔姪)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나, 숙질간의 혼인에 대해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차이가 있다(영국 1949년 혼인법(Marriage Act 1949) 제1조 및 First Schedule, Part I).²²⁾ 4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한 영국은 1975년 아동법(Children Act 1975) 개정에 의해 양친자 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다(영국 1949년 혼인법 제1조). 반면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간의 혼인은 언제나 허용된다.

위 근친혼 금지 규정에 위반된 혼인은 모두 무효이다(동법 제1조 제1항).

다. 미국

미국 「통일 혼인 및 이혼법(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이하 'UMDA'로 약칭한다.) 역시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숙질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07조 (a)(2)). 위 법에 따른 형제자매 및 숙질에는 부모 양쪽을 같이 하는 경우와 부모 중 한쪽만 같이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동법 제207조 (a)(2) 및 (3)). 다만, 위 법은 숙질 사이의 혼인이라도 그것이 원주민(인디언, 폴리네시아, 알래스카 원주민 등) 문화의 확립된 관행에 의해 허용된 것

인 때에는 그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다(동법 제207조 (a)(3)).²³⁾ 4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근의 입법경향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²⁴⁾ UMDA는 입양으로 성립된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혼인을 금지한다(동법 제207조 (a)(2)). 유전적 위험은 없지만, 그들 간에 애정 관계의 형성을 금할만한 사회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⁵⁾ 입양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혼인할 수 있다(동법 제207조 (a)(2) 및 (b)).

UMDA에 따라 금지된 근친혼은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동법 제208조(a)(4)).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그의 자녀, 적절한 권한 있는 주 공무원이 근친혼의 혼인무효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①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②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후 5년 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08조(b)). 또한 위 법은 금지된 근친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동법 제207조(c)).

미국에서 UMDA를 택하고 있는 주는 거의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텍사스주 등을 비롯한 18개 주에서는 UMDA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숙질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²⁶⁾ 이때 부모 양쪽을 같이하는 방계혈족의 경우에만 혼인이 금지되는지 또는 입양의 경우에도

22) 영국이 3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국교회의 독립과 관련이 있다. 헨리 8세는 형수였던 캐서린 왕비와 혼인한 것을 무효로 돌리고 앤 불린과 혼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교황은 캐서린 왕비의 조카였던 스페인 황제 카를 5세의 압박으로 위 근친혼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에 헨리 8세는 1534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후 부당한 로마 교회법을 폐하고 신법(神法, God's law)으로 돌아간다는 명목으로 1540년 혼인법(Marriage Act 1540)을 제정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를 3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제한하였다. Carolyn S. Bratt, "Incest Statutes and the Fundamental Right of Marriage: Is Oedipus Free to Marry?", Fam.L.Q. 257(1984), p.283 참조. 헨리 8세가 혼인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윤진수(2019), 267면 참조.

23)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1974, p.16.

24) Ibid.

25) Ibid.

26) 캘리포니아주(Cal.Fam Code §2200); 콜로라도주(Colo.Rev.Stat. §14-2-110); 코네티컷주(Conn.Gen.Stat.§46B-21); 플로리다주(Fla.Stat.Ann. §741.21.); 조지아주(Ga.Code.Ann. §19-3-3); 하와이주(Haw.Rev.Stat.Ann. §572-1); 아이다호주(Idaho Code Ann. §32-205); 메릴랜드주(Md.Code Ann., Fam.Law §2-202); 매사추세츠주(Mass.Ann Laws Ch.207, §1 및 §2); 네브래스카주(Neb.Rev.Stat.Ann. §28-702); 뉴저지주(N.J.Stat.Ann. §37:1-1); 뉴멕시코주(N.M.Stat.Ann. §40-1-9); 뉴욕주(N.Y.Dom.Rel. §5); 펜실베이니아주(23.Pa.Cons.Stat.Ann. §1703); 사우스캐롤라이나주(S.C.Code Ann. §20-1-10); 텍사스주

동일하게 혼인이 금지되는지 등은 주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상술하지 않는다. 3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는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를 취소사유로 보면서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후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라. 일본

일본 역시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일본 민법 제734조 제1항 본문). 4촌 이상인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입양으로 성립된 직계혈족 간에도 혼인은 금지되며, 입양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734조 제2항). 반면 입양으로 성립된 방계혈족(특히 형제자매) 간에는 혼인이 금지되지 않는다(동법 제734조 제1항 단서).

위 규정에 위반된 혼인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부부 중 일방, 친족 또는 검찰관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744조). 다만,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숙질간에 혼인하는 관습이 남아 있는바, 일본 최고재판소는 3촌인 방계혈족 간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위나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부, 공동 생활 기간의 장단, 자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반윤리성이나 반공익성이 혼인법 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

계로서의 보호를 인정한다.²⁷⁾ 학설상으로도 우생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3촌인 방계혈족 간이나 법정혈족 간의 근친혼 금지는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²⁸⁾

(3) 4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국가

가. 중국

동성불혼 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일찍부터 동성불혼 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²⁹⁾ 중국에서는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만이 금지된다(중국 「혼인법」 제7조 제1호).³⁰⁾ 이때 방계혈족에는 부모 양쪽을 같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쪽만 같이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³¹⁾ 중국에서 방계혈족의 대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본인과 배우자될 자의) 공통조상까지의 세대수와 배우자될 자로부터 공통조상까지의 세대수를 비교하여 그 세대수가 같으면 그 숫자로 대수를 정하고, 세대수가 다른면 세대수가 큰 쪽으로 대수를 정하며, 본인 자신을 1대로 처리한다.³²⁾ 따라서 우리나라식의 촌수 계산법에 따르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혼인이 금지된다. 입양으로 혈족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근친혼 금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자연혈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되며, 윤리적 이유로 입양 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혼인할 수

(Tex.Fam.Code Ann. §6.201); 버지니아주(Va.Code Ann. §20-38.1) 등 참조. 로드아일랜드주는 3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면서도 유대교 전통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된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R.I.Gen.Laws §15-1-2 내지 §15-1-4). 미국 각주의 근친혼 관련 규정은 National Center for Prosecution Child Abuse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Statutory Compilation Regarding Incest Statutes, March 2013, 을 참고하였다(이하 동일).

27) 日本 最高裁判所 2007(平成19). 3. 8.자 판결(民集 61卷 2號 518頁).

28) 犬伏由子 외 3인, 親族・相續法(第2版), 弘文堂, 2016, 48-49면. 우생학적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문헌으로 大村敦志, 家族法(第3版), 有斐閣, 2010, 133-134면; 사회적 측면에서 입양에 의한 직계혈족 간에 혼인을 금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으로 内田 貴, 民法IV: 親族・相續(補訂版), 東京大學出版會, 2007, 74면 참조.

29) 崔幸植(1997), 125면.

30) 중국 「혼인법」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의해 폐지될 예정이나, 새로운 중국 민법전 역시 제1048조에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1) 中華人民共和國 婚姻法 注解與配套(第四版), 中國法制出版社, 2017(이하 「婚姻法(2017)」로 인용한다.), 13면.

32) 가령 형제자매는, 그 공통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본인 사이가 2세대, 부모와 형제자매 사이도 2세대이므로, 나와 2대인 방계혈족이다. 조카는, 공통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본인 사이가 2세대, 본인의 부모와 본인의 조카 사이가 3세대이므로, 나와 3대인 방계혈족이다. 婚姻法(2017), 12-13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³³⁾

위 규정에 위반된 근친혼은 무효이나(동법 제10조 제2호),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혼인의 효력이 상실된다.³⁴⁾ 혼인무효의 소는 혼인당사자와 당사자의 근친이 청구할 수 있다.³⁵⁾

나. 미국

3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일부 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주들은 대부분 4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³⁶⁾ 이때 부모 양쪽을 같이하는 방계혈족의 경우에만 혼인이 금지되는지 또는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혼인이 금지되는지 등은 주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상술하지 않는다. 특기할만한 것은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주들은 4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반면,³⁷⁾ 다른 일부 주들은 그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애리조나주와 유타주는 양 당사자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에게 생식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촌 남매간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³⁸⁾

(4) 6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국가

대만은 직계혈족 및 6친등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대만 민법 제98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대만의 ‘친등(親等)’ 계산 방법은 우리나라의 촌수 계산 방법과 같으므로(동법 제968조), 6촌 이내의 방계혈족 간에 혼인이 금지되는 셈이다. 이때 혈족에는 입양으로 성립된 법정혈족도 포함됨이 원칙이나, 입양으로 4촌 또는 6촌이 된 동일항렬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허용된다(동법 제938조 제1항 제2호 단서). 단, 입양으로 직계혈족이 된 자 사이의 혼인은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금지된다(동법 제938조 제3항).

33) 婚姻法(2017), 13면.

34) 婚姻法(2017), 19면.

35) 最高人民法院關於活用〈〈中華人民共和國 婚姻法〉〉若干問題的解釋(一) 第7條.

36) Douglas E. Abrams et al., Contemporary Family Law(Forth Editio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5, p.125. 위 주들은 직계혈족·형제자매·숙질 및 좁은 의미의 사촌(cousin)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우리나라식의 촌수 계산에 따른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근친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표현하였다.

37) 아칸소주(Ark.Cod.Ann.§9-11-106); 델라웨어주(Del.Code Ann.Tit.13 §101); 아이오와주(Iowa Code §595.19); 캔자스주(Kan.Stat.Ann. §23-102); 켄터키주(Ky.Rev.Stat.Ann. §402.010); 루이지애나주(LA.CIV.CODE.ANN.ART.90); 미시간주(Mich.Comp.Laws Serv. §551.3 및 §551.4); 미네소타주(Minn.Stat. §517.03); 미시시피주(Miss.Code Ann. §93-1-1); 미주리주(Mo.Rev.Stat. §451.020); 몬태나주(Mont.Code Ann. §40-1-401); 네바다주(Nev.Rev.Stat.Ann. §122.020); 뉴햄프셔주(N.H.Rev.Stat.Ann. §457:2); 노스캐롤라이나주(N.Y.Penal Law. §51-3); 노스다코타주(N.D.Cent.Code §14-03-03); 오하이오주(Ohio Rev. Code. Ann. §3101.01); 오클라호마주(Okla.Stat. Ann.Tit.43, §2); 오레곤주(Or.Rev.Stat. §106.020); 사우스다코타주(S.D.Codified Laws §25-1-6); 워싱턴주(Wash.Rev.Code.Ann. §26.04.020); 웨스트버지니아주(W.Va.Code Ann. §48-2-302); 와이오밍주(Wyo.Stat.Ann. §20-2-101) 등. 이 중 오하이오주 등 몇몇 주는 종사촌(second cousin)보다 가까운 친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법에 따른 5촌(가령 당숙)은 종사촌과 같은 열에 속하므로, 종사촌보다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의 친족관념에 따르면 사촌지간까지만 혼인이 가능한 셈이다.

38) Arizona Revised Statutes §25-101; Utah Code Ann. §30-1-1. 일리노이주는 의사의 진단서 없이 4촌 간의 혼인이 가능한 연령을 만50세로(750 Ill.Comp.Stat.Ann. 5/212), 위스콘신주는 만55세로(Wis. Stat. §765.03)로 설정하고 있다. 인디애나주는 65세에 달하기 전까지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4촌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으나, 65세에 달한 후에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Ind.Code Ann. §31-11-8-3), 메인주는 연령과 무관하게 당사자가 의사로부터 유전 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4촌 간의 혼인을 허용한다(Me.Rev.Stat.Ann.Tit.19-A, §701).

(5) 8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국가

우리나라 외에는 북한만이 8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북한 가족법 제10조). 특히 북한은 2004년 가족법을 개정하여 8촌 이내 방계혈족이었던 자 사이에서도 혼인을 금지하였는데, 특히 “인민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생활풍습과 감정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³⁹⁾

북한에서도 8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당연무효설’과는 차이가 있다(북한 가족법 제13조).⁴⁰⁾

3.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관계나 형제자매 간의 근친혼에 대한 금기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반면,⁴¹⁾ 3촌 이상인 혈족과의 혼인을 금지할 것인지 또는 어느 범위까지 금지할 것인지는 사회에 따라 그

태도가 매우 다양하다.⁴²⁾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간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심리적 본성에 따른 것으로서 인류 보편의 문화적 현상이다.⁴³⁾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는 명백한 역할의 구별이 있다.⁴⁴⁾ 성적 교섭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확장하는 것은 오롯이 부모의 역할이며, 자녀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대체할 후속세대로서의 성장이라는 역할이 기대된다. 자녀는 가족 내에서 부모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성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수행해서도 안 된다. 성적 긴장 및 갈등 관계로 인한 가족의 붕괴를 방지하고, 인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양육된 다음 세대를 확보하려면 가족 간에 성적 역할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다.⁴⁵⁾ 이것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즉,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간의 혼인은 금지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가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간에 혼인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성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절실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국가는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간의 근친혼으

39) 김영규, “남북한 혼인법의 통합방안”, 法學論叢 第44卷 第2號(2020), 198면 및 각주 20) 참조.

40) 자세한 내용은 집필대표 신영호, 북한 가족법 주석, 법무부, 2015, 130-138면 참조.

41) Abraham Rosman et al., The Tapestry of Culture: An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Ninth Ed.), AltaMira Press, 2009, p.101

42) Bratt(1984), p.258.

43) Bratt(1984), pp.287-288.

44)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각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결정도 참조: “혼인과 혈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족에 있어서는 존경과 사랑이 그 존재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직계존속은 비속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정신적·육체적 측면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보호하고 그 비속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상·도덕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한편,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 분담과 존경과 보은(報恩)의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인류가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 확립되어진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로서, 이러한 윤리는 가정은 물론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본질서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법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며,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5) 이와 유사한 취지로 Harry D. Krause et al., Family Law(5th ed.), Thomson West, 2003, p.66-67 참조.

46) 가령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몰도바, 폴란드, 산 마리노,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은 형제자매 간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유럽인권재판소 2012. 4. 12. 판결(Case of Stubing v. Germany), [2013] 1 FCR 107 참조). 미국 역시 뉴저지주와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미국 각주의 태도에 대해서는 Brett H. McDonnell, “Is Incest Next?”, 10 Cardozo Women’s L.J 337, 349(2004)도 참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8. 2. 26. 결정 역시 남매간의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는 독일 형법 제17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 규정이 사

로부터 혼인 및 가족생활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⁴⁷⁾ 국가는 근친상간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근친혼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또는 민사상 혼인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완화된 위헌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반면 그 밖의 친족(가령 이복형제자매, 숙질, 사촌 등)간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과는 무관하다. 절을 바꾸어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III. 근친혼 금지와 기본권 보장

II.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친혼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변동되어 왔다. 지면 관계상 중세 유럽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1. 근친혼 금지 규범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 중세 유럽의 경우

유럽에서는 본래 근친혼이 금지되는 범위가 매우 좁았고, 숙질간의 혼인도 종종 관찰되었으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숙질간의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이래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⁴⁸⁾ 특히 9세기경에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4촌에서 7촌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촌수계산 법도 변화하였다.⁴⁹⁾ 본인으로부터 (본인과 배우자 될 자의) 공동 조상까지의 세대수와 공동 조상으로부터 배우자 될 자까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것을 촌수로 하는 대신, 본인으로부터 공동 조상까지의 세대수와 배우자 될 자로부터 공동 조상까지의 세대수를 비교하여 더 큰 쪽을 촌수로 삼았던 것이다. 이로써 교회법에 따른 근친혼의 범위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자기의 7대조 이내의 후손과는 모두 혼인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⁵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근친혼이 행해지는 빈도가 매우 줄어들기는 하였으나,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족들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근친혼이 횡행하였다.⁵²⁾ 그들은 영토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신분에 걸맞는 혼인을 할 필요가 절실하였으므로 근친혼 외에는 혼인의 선택지가 그다지 없었던 반면, 교회가 요구하였던 넓은 범위의 근친혼 금지는, 중혼이나 이혼의 금지와 달리, 성경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실적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

생활 보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남매간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그들은 가족 내에서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고(오빠이자 남편, 동생이자 아내), 그들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의 가족 내 지위에도 혼란이 발생하며(자녀이자 조카), 이는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족의 구조와 사회 전반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신뢰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유전적 결함을 발생시킬 위험도 증대시킨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BVerfGE 120, 224). 위 결정과 위 조문의 유럽인권협약 위반 문제를 다루었던 유럽인권재판소 2012. 4. 12. 판결(Case of Stubing v. Germany)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윤진수(2019), 265면 참조.

47)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결정: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48) 강일휴(2001), 78-79면.

49) Constance B. Bouchard, “Consanguinity and Noble Marriages in the Tenth and Eleventh Centuries”, Speculum Vol.56, No.2(1981), pp.269-270. 그 밖에 이 무렵 교회법에 따른 근친혼 범위 확립 과정에 대해서는 강일휴(2001), 80-85면 참조.

50) 11세기 부르차드(Burchard de Worms)의 교령집(Decretum) 제7권(De consanguinitate)에는 7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와 그 촌수의 계산 방법이 상세히 담겨있다.

51) Bouchard(1981), pp.271-284.

52) 강일휴(2001), 83, 98면; 강일휴, “중세 프랑스 귀족의 기원과 변천”, 서양중세사연구 제14호(2004), 52면.

었다.⁵³⁾ 근친금혼의 교령은 실제로 근친혼을 금지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으로 사용되기도는, 교회가 왕족이나 귀족 가문들 간의 성혼(成婚)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결국 탈법적 이혼 수단으로 전락하였다.⁵⁴⁾

가령 알리에노르 다키텐(Aliénor d'Aquitaine) 여공작은 방계 혈족이었던 프랑스의 루이 7세와 혼인하였으나,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사이가 나빠지자 근친혼을 이유로 혼인을 무효화시키고, 영지를 반환받은 다음 8주 만에 또 다른 방계 혈족이자, 루이 7세보다 더 촌수가 가까웠던 잉글랜드의 헨리 2세와 혼인하였다. 그 후 루이 7세와 재혼한 콩스탕스 역시 알리에노르 다키텐과 비슷한 촌수의 근친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알리에노르 다키텐과 루이 7세간의 혼인이 명백히 교회법에 어긋나는 근친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별에 반대하면서 이를 근친혼으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혼인을 무효화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알리에노르 다키텐과 루이 7세가 각각 교령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 범위 내에 있는 친족과 재혼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혼인의 성립을 묵인하였다.

결국 교회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오랜 교리를 포기하고,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를 4촌으로 제한하였다.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점, 교회로서는 혼인당사자들 사이에 7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교회가 혼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게 됨에 따라 근친 관계의 심사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⁵⁵⁾

2. 근친혼 금지 규범에 대한 역사적 고찰 (2)

: 우리나라의 경우

(1) 고려시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친혼을 제한하는 취지 규정이 등장한 것은 고려 문종 12년(1058)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촌지간(大功親)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관직 진출을 막는 정도의 규정에 불과하였고, 왕 자신이 그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⁵⁶⁾ II.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초기 왕실은 왕권 강화를 위해 근친혼을 반복하였고, 그것은 신라 시대의 근친혼 관행과 이어져 귀족층이나 서민층의 혼인풍속에도 영향을 미쳤다.⁵⁷⁾ 그 결과 고려 시대에는 왕실에서뿐만 아니라, 귀족층이나 서민층에서도 이복형제나 조카, 사촌과의 혼인이 풍속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⁵⁸⁾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고려 시대 때 성리학에 따른 오복친(五服親)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즉시 중국식의 동성금혼(同姓禁婚)의 관행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었다. 숙종 원년(1096)에는 근친혼의 범위를 오촌 및 육촌지간(小功親)까지로 확대하였으나, 현실과 괴리된 규범으로 여겨져 숙종 6년(1101)에 그 금지가 해제되었고, 예종 11년(1116)에 다시 규제를 시작하여 의종 원년(1149)에는 재차 오촌 및 육촌지간(小功親)의 혼인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의 반복이야말로 고려 중기까지 근친혼의 관행이 계속 살아 있었음을 보여준다.⁵⁹⁾

하지만 원(元) 세조가 충선왕을 부마로 삼으면서 사정은 급변하였다. 원(元) 세조는 계국대장공주를 위해 고려 왕실

53) 교회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의한 귀족 혼인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강일휴(2001), 93-98면 참조

54) Battes(2018), S.87; Bouchard(1981), pp.268-269; Bratt(1984), 283 Fn.131 참조. 강일휴(2001), 98-99면; 강일휴(2004), 52면.

55) 강일휴(2001), 98-99면.

56) 이종서(2003), 49면; 이창기(2010), 110면; 이화형(2015), 167면; 崔幸植(1997), 124면; 최봉준(2016), 98면.

57) 金壽壽(1984), 12면.

58) 김창현(2018), 102-106면. 같은 취지로 김갑동(2001), 12면; 이종서(2003), 53면; 이창기(2010), 110면; 이화형(2015), 167면; 허홍식(1994), 82-83면.

59) 김갑동(2001), 12면; 김창현(2018), 85, 106-107면; 이종서(2003), 50면; 최봉준(2016), 98-99면 참조. 정공식(2017), 147면은 “경종 원년”에 소공친 간의 혼인이 금지되었다고 서술하나, “숙종 원년”의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혼인을 통한 원(元)의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1275년과 129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의 근친혼 내지 동성혼(同姓婚) 관행을 비난하는 취지의 조서를 보내었고, 이에 따라 충선왕이 1308년 복위교서에 의해 동성혼을 금지하면서 근친혼의 관행은 왕실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⁶⁰⁾ 특히 충선왕은 복위교서에서 왕실뿐만 아니라, 문무 양반 가문의 동성혼도 모두 금지하였는바, 이는 특정 가문에 의한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⁶¹⁾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근친혼, 특히 동성혼 금지 규정은 외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정자의 힘이 미치는 지배계층에서는 간신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자리 잡은 근친혼의 관행까지 근절시키지는 못하였다. 고려 중기 이후 조선 초기까지도 비교적 먼 친척인 동성(同姓)간의 혼인은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⁶²⁾

중국식의 동성금혼의 원칙이 고려 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없었던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 부계혈통주의를 기반으로 친영례(親迎禮)의 혼인법을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해, 고려는 양측적 친속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관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모계혈족과의 혼인이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계혈족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들에

게 생경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⁶³⁾ 그 결과 동성불혼 제도의 인위적 이식 후 고려에서는 동성(同姓)이라는 이유만으로 먼 친척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보다, 모계혈족(외가)이나 인척(처가)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⁶⁴⁾ 충선왕은 동성금혼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가 4촌과의 혼인을 허용하였으나, 헌사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이를 금지하기로 하였고, 공민왕 16년(1367)에는 처자매 및 이성 6촌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었다.⁶⁵⁾

(2) 조선시대

양측적 친속관계와 남귀여가혼의 관습에 기초한 고려 시대의 근친혼 관련 법제는 조선 중기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아 중국과 같이 부계혈통주의를 기초로 동성금혼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외가를 중히 여기는 풍속”을 고려하여 성종 2년(1471)에는 이성 6촌까지, 영조 11년(1735)에는 이성 8촌까지 그 혼인을 금지하였다.⁶⁶⁾ 이는 중국의 동성불혼 제도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한, 모계나 처계와의 혼인을 규제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중국식의 동성불혼 제도가 우리나라의 관습으로 자리잡은 것은 유교 이념이 정착된 조선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였다.⁶⁷⁾ 중법사상에 기초하여 직계비속 장남자에 의한 제사상

60) 김창현(2018), 107면; 정궁식(2017), 148면; 최봉준(2016), 101-104면; 허홍식(1994), 82-83면. 이와 달리 충선왕 시대에 동성혼이 금지된 것이 성리학의 도래와 부계혈통주의의 강화의 영향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화형(2015), 167면.

61) 최봉준(2016), 104-105, 117면.

62) 이종서(2003), 53면; 이창기(2010), 110, 127면; 이화형(2015), 167면. 특히 朴晉勳, “여말선초 江陵 지역에서의 통혼실태- 江陵崔氏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제43호(2011), 165-177면은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까지 강릉 최씨 집안의 혼인사를 분석하여 특정 집안들과 혼인이 반복적·중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8촌이라는 근친관계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향렬은 무시되거나 파괴되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63) 고려 시대 상피제(相避制)에서도 상피의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중국의 오복친 개념이 아닌, 고려시대에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친족 개념, 즉 4촌 이내의 친가와 외가 혈족으로 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최봉준(2016), 97면.

64) 김창현(2018), 109면; 이종서(2003), 51-53, 59-61면; 최봉준(2016), 99-109면 참조.

65) 김창현(2018), 85면. 정궁식(2017), 148면은 공민왕이 이 사건을 빌미로 혈연 중심의 사적 권력구조를 타파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나, 숨겨진 목적이 무엇이었던 부계 쪽의 근친혼 금지 범위가 확대된 것에 상응하여 처가 쪽의 근친혼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66) 이종서(2003), 53-57, 61-63면; 정궁식(2017), 158면. 그러나 윤진수(2019), 263면은 조선 시대에 4촌 이내의 모계혈족과의 혼인이 금지되었다고 서술한다.

67) 金嘯壽(1984), 12-13면.

속과 단독상속 제도가 사회적 규범력을 획득함에 따라 여자가 재산상속으로부터 제외되자,⁶⁸⁾ 남귀여가혼의 관습은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었고, 반친영(半親迎) 내지 친영례(親迎禮)의 관습이 확산되었다.⁶⁹⁾ 남귀여가혼의 관행 하에서는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사위들의 유입으로 각성촌(各姓村)이 유지되지만, 친영례가 확산되면 마을은 점차 집성촌(集姓村)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⁷⁰⁾ 부계혈통주의가 부계 친족 집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집성촌에서 함께 생활하는 후손들은 묘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적·문화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대가족 문화를 형성하였다.⁷¹⁾ 덕분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동성불혼 제도에 따라 혼인이 금지되는 인적 범위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주나라에서 중법사상에 기초하여 확립된 동성불혼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부계혈통주의의 실현과 더불어 비로소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⁷²⁾ 영조는 중국의 예를 따라 동성이본(同姓異本) 간의 혼인까지 금지하였으나,⁷³⁾ 이는 본가(本家)를 중심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던 우리의 관습과는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결국 고종 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72조는 동성동본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다시 후퇴하였다.⁷⁴⁾

그 후 부계혈통주의의 약화, 가부장적 대가족의 분화된 핵가족으로의 변화, 집성촌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 사회의 개인 중심의 산업사회로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다시 동성동본금혼의 현실적 규범력이 약화된 것, 동성동본 간에 혼인을 한 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婚姻에 관한 特例法」⁷⁵⁾이 시행된 것, 결국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더이상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면서 혼인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⁷⁶⁾, 그에 따라 2005. 3. 31. 개정민법이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지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역사적 고찰이 보여주는 바는 명백하다.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숙질, 사촌 그 밖의 방계혈족 간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인위적 정책 결정의 결과물에 불과하다.⁷⁷⁾ 도덕관념이나 특정한 종교적·철학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68) 정궁식(2017), 155면.

69) 이창기(2010), 128-129면.

70) 이창기(2010), 128-129면.

71) 정궁식(2017), 156면.

70) 이창기(2010), 128-129면.

71) 정궁식(2017), 156면.

72) 동성불혼 제도와 부계혈통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창기(2010), 127면; 李熙培(1998), 223면도 참조.

73) 속대전(續大典) 예전(禮典) 혼가조(婚嫁條). 金疇壽(1984), 13면도 참조.

74) 金疇壽(1984), 13면; 李熙培(1998), 222면. 위 문헌에 따르면 조선말에는 동성불혼의 관습이 완화된 근친 외에는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이라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75) 법률 제3052호(1977. 12. 31. 제정, 1978. 12. 31. 실효); 법률 제3971호(1987. 11. 28. 제정, 1988. 12. 31. 실효); 법률 제5013호(1995. 12. 6. 제정, 1996. 12. 31. 실효).

76) 현재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판례집 9-2). 위 결정에 대한 평석으로 李熙培, “婚姻, 家族政策理念과 違憲與否決定”, 家族法研究 第11號(1997), 71-77면; 李熙培(1998), 237-239면; 尹眞秀(初出: 1998), 190-192면; 윤진수(2019), 260-261면 등 참조.

77)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 역시 동성동본불혼제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의 혼인제도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으나, 규범만으로 근친혼의 습속(習俗)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은 없다. 넓은 범위의 근친 금혼 제도는 그 ‘혼인 금지의 대상이 되는 근친의 범위’와 ‘그 사회의 경제구조 및 혼인문화에 따라 정해진 가족의 범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⁷⁸⁾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방계혈족 간의 근친혼 금지 규범을 혼인제도의 일부, 즉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의사로는 용이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견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⁷⁹⁾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방계혈족 간의 혼인 금지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⁸⁰⁾

한때 가족의 형태는 형제자매 간의 집단적 잡혼(雜婚) 형태인 혈족혼(血族婚)으로부터 계급 단위 또는 씨족 단위의 족외혼으로 발전해나가며, 근친혼 금지 범위의 확대야말로 문명 진보의 상징인 것으로 이해되어왔다.⁸¹⁾ 그것은 윤리의 영역에서는 참인 명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의 역사는 그러한 윤리를 법에 의해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은 오히려 근친혼의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⁸²⁾ 개인의 혼인할 자유를 보장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물론 방계혈족 간의 혼인 금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고 해서, 방계혈족 간의 혼인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제도적 보장 외에도 사회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위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유형의 근친혼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헌법 제10조 및 제36조에 따라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엄숙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그러한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⁸³⁾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8) 유사한 취지로 Krause(2003), p.64 참조.

79) 大村敦志(2010), 139면.

80) 헌법 제36조에 따라 제도적 보장의 대상이 되는 ‘혼인’을 민법상 법률혼 제도에 따른 ‘혼인’ 개념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입법재량권 행사의 결과인 민법상 혼인 개념이 국회에 입법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헌법상 혼인 개념을 좌우할 수는 없다.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상 혼인 개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세히는 이재희, 혼인의 헌법적 보장 :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7-42면 참조

81) 루이스 헨리 모건/최달곤·정동호 옮김, 고대사회, 문화문고, 2005, 67-108면. 같은 맥락에서 1957. 11. 6. 국회 본회의에서의 金炳魯의 발언도 흥미롭다.: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는 가까운 근친 사이에서만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교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인문이 발달되어 갈수록 차차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친족간 혼인 금지의 전통으로서 인류문화의 발달 초기부터 최고의 문화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이것이 서양 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도덕문화, 윤리문화가 향상되고 생리학의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차차 우리나라를 모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200년 후가 될지 그 시기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양의 여러 나라가 과학문명으로야 물론 우리보다 우수하여 선진국가로 대접할 수밖에 없지만 인류의 기초적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높습니다.” 위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명순구, “1958년 민법 제809조의 歷程 -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정정책 담론을 겸하여-”, 안암법학 제26권(2008), 85면 참조.

82) Battes(2018), S.87.

83) 같은 취지로 李瀾培(1998), 231면. McDonnell(2004), pp.354-355 역시 이와 유사하게 부모-자녀나 형제자매 등의 관계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보편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근친상간 행위에 관한 규제는 완화된 심사로 충분하지만, 계친자·의붓 형제자매·법정혈족관계·사촌 관계 등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3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

제3차·4차 가족법개정(1978~2002) 4

국회 법사위는 12월 8일 오후 공청회 형식으로 '가족법 개정안 참고인 진술 모임'을 열고 엿새만인 12월 14일 가족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12월 18일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완화했으나 '동성동본불혼조항'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드디어 12월 19일 정기국회 제147회 본회의가 열렸다. 조승형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된 '민법 중 친족 상속편 개정안'의 제안 경위 설명을 통해 "김장숙, 박영숙 의원 등 147명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을 가족법 소위에서 8차례, 상임위에서 4차례 심의했다."고 밝히고 그 외 참고인 진술 청취를 토대로 법사위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간의 경위를 보고했다.

조승형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고 김재순 국회의장이 가족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했다. 이로써 지난 37년 간 한국 여성운동의 주요 쟁점이 되어온 남녀차별의 법 개정 운동이 큰 고비를 넘긴 것이다. 1989년 12월에 이루어진 제3차 가족법 개정은 호주제도, 친족범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친권 및 양육권, 재산상속제도, 적모 서자와 계



▲ 1991년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회 및 피해자 사례발표회

모자 관계, 혼인중 부부의 권리 의무 규정의 시정 등 역대 개정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적인 개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가족법개정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운동의 핵심조항이었던 호주제도는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이름만 바꾸어 존치하고 있었으며 동성동본불혼조항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 1995년 동성동본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 기자회견

1989년 12월에 이루어진 가족법 개정은 분명 그동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적인 것이었으며 여성운동의 큰 성과였다. 그러나 가족법개정운동은 멈출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운동의 핵심조항이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조항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상담소는 1990년 1월 4일 ‘동성동본불혼’ 규정 폐지를 위한 운동을 또 시작했다. 우선 동성동본 피해자 신고센터를 다시 개설하였고 1991년에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국회 여성특위를 통한 논의를 계속해 나갔다. 1995년 4월 10일에는 동성동본불혼 규정의 피해자 8쌍이 혼인신고 불

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했고 가정법원은 5월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0월 30일에는 국회의원 56명이 의원입법으로 ‘혼인특례법’을 국회 여성특위 주관 하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불혼 규정에 관한 위헌 법률 심판제청 판결에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상담소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또 하나의 개가를 올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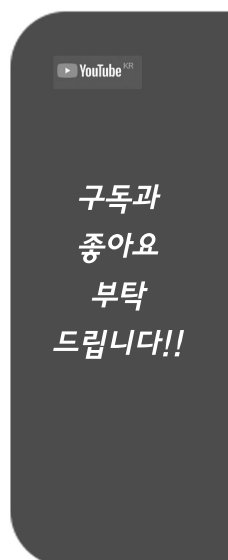
1998년 7월 24일 법무부는 가족법의 문제 조항을 폐지, 개선, 신설하는 민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폐지하고 혼인제한 범위를 조정하며,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직 호주제와 호적제도가 남아 있으나 현실적인 범주에서는 양성평등의 이상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개정과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정이 있었다.

편집부

“유튜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검색하세요.”

상담소
유튜브
채널 오픈





음주와 분노조절의 실패 깨닫고

상담 통해 노력하면서 가족 갈등의 해결 실마리 찾아

사건번호 2019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성) 개별상담 1회,
피해자(여성) 개별상담 1회,
행위자 및 피해자 상담 4회,
행위자 및 피해자 교육강좌 10회 등 총 16회 실시

상담기간

2019. 6. 3. ~ 2019. 12. 16.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국적이다. 행위자는 전배우자와 이혼하고 한국에는 F4 비자로 입국하여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14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으나 배우자의 생활무능력, 무책임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결혼 2년 만에 집을 나왔고 8년 전 행위자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배우자에게 가끔 전화를 하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배우자가 요구하는 돈을 주었으며 지금은 영주권자이다.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잘 살라고 덕담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그다지 나

쁘지는 않다고 한다. 피해자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하고 한국에서 행위자와 살 생각이 다.

행위자는 2018년 12월 사건당일 자신의 생일에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후 식칼의 칼자루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찌를래?’ 라고 말하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실혼이 아니지만 범죄사실 조사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로 조사되어 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동거하는 관계로 향후 공동생활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였다.

행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보니 성격이 거칠어져 쉽게 화를 냈다고 인정하였으며, 앞으로는 폭언, 폭력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겠다고 실천과제를 정하였다. 피해자 역시 화를 잘 조절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실천과제를 정하였다. 두 사람은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아내를 때리는 것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담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이해를 넓히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였다. 상담을 통한 변

화로 두 사람 모두 화를 덜 내고 상대방을 수용하려고 노력한 점을 꼽았다.

피해자가 배우자와 법적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행위자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정리하도록 당부하였다. 만일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본소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혼을 모색해보도록 안내하였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점들을 실천하도록 당부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등 총 12회 실시

상담기간

2019. 6. 19. ~ 2019. 12.1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4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1녀(15세, 13세)가 있다. 행위자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는 보험업에 종사한다.

행위자는 2018년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조카가 피해자에게 반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는 생업 상 휴무하는 수요일에만 상담이 가능한데 처음 위탁된 상담소에서는 수요일 상담이 어렵다고 하여 위탁기관을 본소로 변경하는 결정에 의하여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지구대에 신고 된 경험이 있으나 보호처분은 처음이었다. 행위자는 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자신의 분노조절 실패로 규정하고, 평소 부부갈등에 자신의 음주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1주일에 1회 음주로, 절주를 약속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상담의 목표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기로 정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이 피해자와 아이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폭력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비난하거나 체벌하지는 않지만 어려서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탓에 아이들이 자신에게 친밀감을 많이 갖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친밀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아이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아들을 아침마다 꼭 안아주는 스킨십을 실천하였다. 또한 아이 훈육법을 부부가 공유함으로써 부부공동 관심사가 생겼다.

중간점검시 피해자의 보고에 의하면,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으며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변화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물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폭력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변하였으며, 술도 많이 줄었고,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기간도 상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도 행위자의 노력에 부응하여 충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부부간 이해와 소통이 향상 되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생업 때문에 상담 참여횟수는 많지 않았으나 결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상담의 목표가 분명하였으며, 실천의지가 확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력을 인정받았다. 상담 종결 즈음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절주, 단주를 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다투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며 행위자의 변화에 만족해하였다. 행위자 역시 현재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더 노력할 점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을 꼽았다. 감정 조절을 위한 실천과제로 감사일기를 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혼인 ③

● 배우자 본인이 혼인 전 알지 못한 불임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Q 중매로 만나 6개월 만에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후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임신이 되지 아니하여 남편과 함께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은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남편도 위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러한 상태는 향후 개선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그렇지만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 상 정당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신

가능 여부는 위 조항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의 불임을 사유로 혼인취소청구를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Q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교제 당시 남편은 대학을 졸업했고 초혼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A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며,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1.16. 선고 2002드단 69092 판결).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동법 제823조). 따



라서 귀하는 남편이 학력, 혼인경력과 혼인 전 자녀에 대한 사실을 혼인 전에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귀하를 기망한 것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16조 제3호, 제822조, 제825조).



Q 저는 2017년경 이혼하면서 아이를 전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경 제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사경을 헤매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단기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향후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도저히 부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 할 수 있을까요?

A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한편,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나 재판 이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당초의 양육비 부담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판정을 이유로 사정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의 건강상황 및 경제상황, 소득 수준 등에 맞는 적절한 액수로 양육비를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상담위원

배드 지니어스

감독 나타우트 폰피리아

출연 추티몬 추앵차로엔수키잉, 차논 산티네툰쿨, 에이샤 호수완, 티라돈 수파편핀요, 타네 와라카누크로



우등생 린(추티몬 추앵차로엔수키잉)은 아버지(타네 와라카누크로)의 강권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의 면접을 본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더 비싼 수업료와 통학 비용을 고민하던 린은, 전액 장학금이라는 좋은 조건까지 제시되자 전학을 결심한다. 이곳에서 새롭게 사귀 친구 그레이스(에이샤 호수완)가 클럽 활동에 필요한 성적 커트라인 때문에 고민하자 린은 결국 시험 도중 몰래 답을 알려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레이스의 남자친구 팻(티라돈 수파편핀요)은 큰돈을 약속하며 ‘정기적인’ 커닝 사업을 제안한다. 린은 함께 장학생으로 들어온 비슷한 처지의 모범생 뱅크(차논 산티네툰쿨)까지 이 사업에 끌어들이려 한다.

한국에서 개봉했던 태국 영화의 대부분은 <옹박>의 인기 물이에 힘입은 액션 영화와 <셔터> 등으로 인기를 끌었던 공포 영화에 치중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17년 아시

아 전역의 박스오피스를 휩쓸었던 이른바 ‘커닝 스릴러’ <배드 지니어스>는 아시아 관객 대부분이 깊이 공감할 만한 학업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열이라면 그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한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사실 <배드 지니어스>는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본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순진하게도 비춰질 수 있는 영화다. ‘금수저’ 그레이스와 팻은 궁궐 같은 저택에 살고 가벼운 저녁 외출로 호텔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따를 수 있는 정도의 부를 누린다.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돈을 매 시험 건마다 지불하고 정답을 사는 것 정도는 그들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학금이 없었다면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한 린과 뱅크에게는, 그 부자 친구들이 시험 때마다 내미는 돈을 정의롭게 거절할 만한 명분이 많지 않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린과 뱅크는 그 돈을 부모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 린은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암묵적으로 ‘엄마’ 역할까지 떠안아야 하며, 세탁소를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뱅크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겸해야 한다. 두 소년소녀는 어른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책임을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재산이라면 천재적인 두뇌밖에 없는 두 사람에게 그 두 뇌를 이용한 돈벌이의 부도덕성만을 강조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선택일까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는다.

이른테면 2년 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과 <배드 지니어스>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배드 지니어스>의 주인공 린과 뱅크가 <스카이캐슬>의 혜나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이입하기 쉬울 것 같다. 혹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등장했던 한국의 경우, 성적/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아이들(과 교사와 부모까지 합쳐진)의 전쟁 같은 학교생활은 대중문화계에서 언제나 인기 있는 콘텐츠였다. 명문대 진학이라는 조건에 걸려 있는 이후의 삶의 차이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기에, 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도덕'과 '양심'을 강조하는 게 어찌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이중계약 아래 그들을 밀어 넣는 것일 수도 있다.

<배드 지니어스>의 결말이 아쉬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영화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늘 빠듯한 집안 경제 상황에 압박을 느끼는 린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서 '머리가 좋은 너는 알아서 잘 클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상당한 부담으로 묘사된다. 혼자 알아서 성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교육까지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린이, 게다가 학교부터 앞장서서 성적이 좋지 않은 부잣집 아이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렸을 때, 자신의 뛰어난 두뇌를 학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선을 누가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학교와 부모 모두가 딱히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그리고 '금수저' 친구들은 법망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린과 뱅크 같은 아이들에게만 공포와 불안과 굴욕을 가하고 그들에게만 양심과 도덕을 갑자기 깨우치려는 결말은, 적어도 한국 관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 닿진 않는 것 같다. <스카이캐슬> 역시 비슷한 결말로 끝났지만, 적어도 TV라는 매체와 영화라는 매체의 파급력의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배드 지니어스>가 제기한 질문의 답이 린과 뱅크라는 어린 개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지워진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윤미, 김진아, 심미숙,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David M. Waters 변호사 님(사이버상담)

• 학생 자원봉사

강원모, 김정민, 김계현, 김민규, 김상철, 김소희, 김준호, 김혜원, 박성환, 박수연, 박연경, 박준영, 박지윤, 배은진, 성휘연, 윤여영, 윤채은, 이상은, 이수정, 이용안, 임지윤, 장성윤, 전우인, 정수나, 정유나, 조예람, 조주현, 한봄이, 한승이, 홍서영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이승훈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정민영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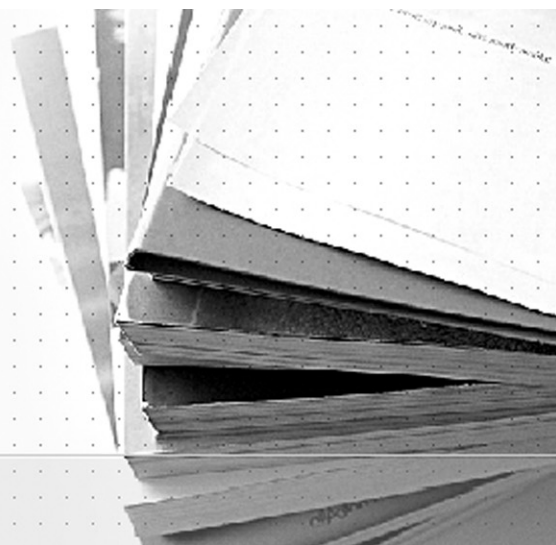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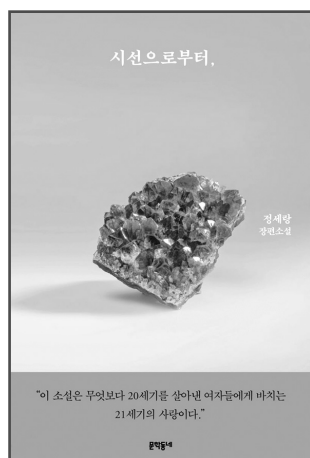
좋은 책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장편소설

문학동네, 2020



지난 설에는 제주도에서 설날 아침을 맞았다.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떨어지는 동백꽃을 보며 지내는 호사를 누렸다. 드디어 양가의 명절에서 모두 해방되었다. 이는 남편이 부모를 모두 잃었고 나도 아버지를 잃었으며 친정 엄마가 명절 차례와 제사를 모두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일까, 솔직하게 온전히 시원하지만은 않았다. 마음에 남아있는 약간의 섭섭함에 대해 꽤 오랜 시간을 곱씹고 있는 중이다. 많은 이들이 제사에 대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반감을 보이지만, 나는 어느 문화에나 관혼상제에 대한 관습은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살짝 살짝 해왔다. 다만 내게는 애뜻하기 그지없는 할아버지 제사에 얼굴도 못 본 시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와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남동생들의 아내들을 볼 때에는 복잡한 심경이 되긴 했다. 나름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앞치마를 챙겨가 설거지를 도맡아 하지만 다 늙었어도 손녀이고 조카인 내게는 칭찬과 덕담이 주어지고 엄마와 올케들에게는 고맙지만 당연한 일을 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주로 성이 다른 여성들의 노동력을 취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습이라니, 거지같기는 하지.

정세랑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는 심시선이 라는 여성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집안의 이야기다. 아무런 정보 없이 책을 펼쳐 '시선'이 사람 이름이어서 우선 조금 놀랐고 책의 처음에 심시선 씨의 가계도가 등장하고 이어서 그 다음 장에 심시선 씨가 생전 TV 토론에 출연하여 제사를 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받아줄 자녀로 큰 딸을 지목하는 대목이 이어지

며 흥미진진해졌다.

그리고 바로 이어 그 큰 딸이 엄마가 살았던 하와이에서 엄마의 십주기를 맞아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이 책은 중간 중간 심시선 씨의 일생과 그가 남겼던 일화가 등장하는 가운데 하와이에서 치러지는 심시선 씨의 십주기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올릴 제물을 준비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시선 씨의 제사상에 무지개 사진이나 마침내 성공한 파도타기에서 얻은 파도의 거품 등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시대의 폭력과 억압 앞에서 순종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시선 씨와 그에게서 이어지는 여성 중심의 삼대 이야기이다. 딸 셋 가운데 막내는 시선 씨의 두 번째 남편이 첫 결혼에서 얻은 딸이기에 그 어떤 혈연의 얽힘도 없지만 그녀는 그저 이 가족의 막내이고 그녀의 자녀들은 이 가족의 손주이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고 새로운 삶을 찾아 하와이로 떠났던 심시선과 그녀의 딸 명혜, 명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손녀 화수와 우윤 등은 우리에게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나는 정말 1984년생 이 작가를, 이 작가가 가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좋아한다.

친구들과의 단독방에 독후감을 남기면서 "시선 씨처럼 살고 싶으나 내 자식들이 협조해 줄 것 같지 않다"고 하자 모두들 동의했다. 내 자식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니가 싶은 알팍한 마음에 혼자 웃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2020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21년도 사업계획 등 검토

방역절차 준수하며 최소 인원만 참석

상담소의 2020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6일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이 가능한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대연, 김명순, 곽배희, 임재연, 김병후 이사 및 한미영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상담소 인사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본 상담소,

법무부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결과

1위 차지해

본 상담소는 법무부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본 소는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에 포함되었지만 청렴협의체 구축, 청렴의 날 제정, 청렴 문구 공모전 개최, 청렴 문구 다국어 번역 게시, 청렴 편지 발송 등 적극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전 부분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합계 점수 89.8점으로 5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대화법 교육 동영상 제작 완성, 교육자료로 활용

본소는 지난 6월 19일 대화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9월 10일부터 한 달 간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이 전문가 내레이션을 맡아 해당부분을 촬영하였다. 11월 17일에는 대화법 교육 동영상 제작이 완성되었는데, 동영상은 '꽃보다 대화 : 우리 부부 살리는 존중 대화법'과 '꽃보다 대화 : 부모 자녀 살리는 존중 대화법' 2편으로 구성되었다.

대화법 교육 동영상은 갈등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폭력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찰-느낌-욕구-부탁의 4단계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본소는 각 동영상을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재발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자료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본소 직원 재교육의 일환으로 본소에서 기획, 제작한 대화법 동영상 시사

본소에서는 11월 3일 직원 재교육의 일환으로 본소에서 기획, 제작한 대화법 교육 동영상에 대한 전 직원 참여 사회를 가졌다. 영상 시사 전, 동영상을 제작한 두물머리 픽처스의 서동일 감독은 연기자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대화법에 어색해하였지만 촬영을 진행 하며 적응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화법에 주목하여 시사하도록 길라잡이 인사말을 하였다. 동영상은 「꽃보다 대화 1. 우리 부부 살리는 존중대화법」(15분 59초 분량)과 「꽃보다 대화 2. 부모자녀 살리는 존중대화법」(17분 41초 분량) 두 개이다. 시사 후 광배희 소장은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대화법을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 갈등 상황에서 활용한다면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완화,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동영상의 의의와 그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시사 후 직원들은 동영상에 대한 소감과 의견들을 나누고 정리,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관련사진 2면)



▲ 서동일 감독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 비대면 및 대면으로 진행

본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김혜선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4회기에 걸쳐 음주문제 피해자 집단상담 및 가해자 집단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매주 목요일 야간에는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이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둘째 목요일(11/12) 오후에는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인 동지교실을 '몸이 기억하는 고통, 신체 및 수면장애'라는 주제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셋째 목요일(11/5, 11/19) 오전에는 장희숙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을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대면으로 진행된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 프로그램은

본소 상담위원들과 정윤경 교수(연세솔루션상담센터),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영등포구청 본소 기관 방문

지난 11월 24일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여성친화정책팀 정은경 팀장과 문선중 주무관이 본소를 방문하여 광배희 소장과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과 본소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본소를 방문한 영등포구청 담당부서 실무진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구조와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본소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 11.4.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전화상담)
- 김진영 상담위원
- 11.10. 영등포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11.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 11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11.18.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전화상담)
- 최수진 상담위원
- 11.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센터 종사자사업전문 교육강의
-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28일 한국의료윤리학회 추
계합동학술대회 및 특별심포지엄(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연
명의료결정법과 가족관계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화여
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 수업 상담참관 지도를 하
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
혼등 조정신청 사건을 조정하였고, 13일에는 이혼 및 위자
료 청구 사건을, 27일에는 이혼 사건을 각 조정하였다. 24

일에는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 진행되는 4대 폭력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주
제로 가정폭력예방교육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각 20분 분
량). 동영상은 서초구 관내 기관종사자들에게 교육영상으
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배희 소장, 김성수 주교와 간담회

광배희 소장은 지난 11월 2일 상담소를 방문한 대한성공
회 김성수 주교, 이대성 신부(강화도 우리마을 원장)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양로원 건립과 관련 법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화도 우리마을’은 1999년 김성수 주교가
물려받은 땅에 세운 공동체로,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다.

2020년 11월 상담통계

총상담 5,637				
법률상담 (4,97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1,034	3,810	124	4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60		75	129	
* 인터넷 정보 이용 19,567				

2020년 1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63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973건(88.2%), 화해조정 46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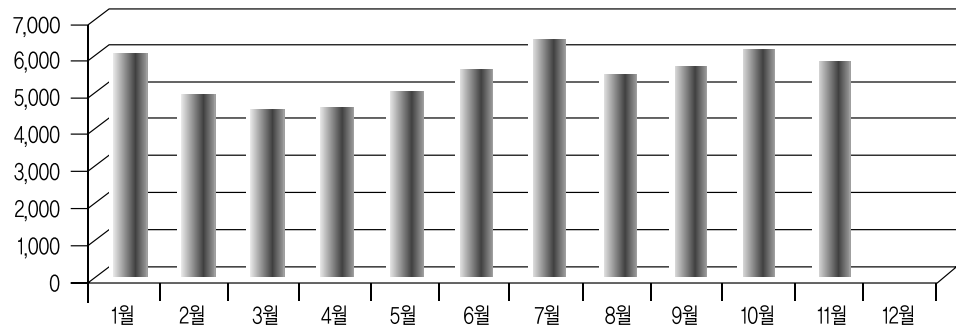
(8.2%), 소장 등 서류작성 75건(1.3%),
소송구조 129건(2.3%)이었다.

법률상담 4,97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월에 비해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3.8%→
4.5%), 양육비(7.3%→7.5%), 면접교
섭권(2.3%→2.9%), 인지(1.0%→
1.2%), 친생부인(0.8%→1.2%), 개명
(1.0%→1.2%), 성년후견(2.9%→
3.4%), 가사절차(5.7%→6.0%), 가사
기타(9.8%→10.7%)에 관한 상담이 증
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2%), 채권·채무
(0.4%→0.6%), 파산(1.7%→1.8%), 개
인회생(0.3%→0.4%), 민사기타(0.5%
→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기타(0.5%→0.6%)에 관한 상담이 증
가하였다.

법률상담 4,97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34건(20.8%),
전화상담 3,810건(76.6%), 인터넷상담
124건(2.5%), 순회상담 4건(0.1%), 지
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아내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272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1세)는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피고(여, 43세)를 소개받아 200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8년 1월 혼인신고 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에는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피고가 베트남에 돌아갔는지 아니면 한국에 거주 중인지도 모른 채 10여 년이 지났다. 원고는 몸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고시원에 혼자 거주 중이다. 주민센터 직원의 권유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서류상 배우자가 존재하여서 위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5.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도박과 경마에 빠져 가정 경제를 등한시 하고 폭행을 저지른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9-323

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2세)는 2011년 1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남, 8세, 여, 6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와 사소한 말다툼에도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 기물을 던져 부수고, 원고와 어린 사건본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원고 몰래 신혼집 전세보증금 3,000만 원과 원고 명의 카드로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모조리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도박을 하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자주 화풀이하였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도박을 하였고, 중독성이 더 강한 경마에 빠져들었다. 2015년 3월경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였는데, 피고는 심각한 의치증으로 원고에게 폭언하고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에게 분풀이식 폭행을 하였다. 별거 중임에도 찾아오는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현재 거주하던 집을 나와 쉼터에 거주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 8.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을 2020.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0. 8.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는 2021. 3.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 할 수 있다.
 - 가. 일정: 월 1회, 매월 4번째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 나. 인도방법: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갔다가 다시 데려다 주기로 한다.
 - 다. 가능하면 위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되,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5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던 부에 대한 감치결정

법률구조 2020-27

담당 : 최원호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여, 45세)과 피신청인(남, 46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0세, 19세)을 두었으나 2016년 11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2017년 1월부터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이혼 후 피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신청인의 연락을 피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본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통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해고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건본인 한 명이 성년이 된 후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직장에 복직한 상황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은 이행의무 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0. 10. 19.)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5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교도소로 정한다.

잘못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310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0세)은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다. 배우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IMF사태가 발생하여 부도를 피할 수 없었고, 신청인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마저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다. 이후 배우자는 책임을 지고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간암으로 사망하면서 신청인이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만 있던 신청인은 고령의 나이와 경험부족으로 취업이 어려워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자활근로를 하며 월 평균 8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13억 원에 달하는 보증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1. 3.)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 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344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6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각처럼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였다. 이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생계비를 마련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오히려 생계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8년 5월경 급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에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던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지인의 임대주택에서 무상거주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5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상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1. 17.)

채무자를 면책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20-485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5세)과 상대방(남, 44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남, 16세)을 두었으나, 2004년 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으로 친권자가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사

건본인을 양육하였으며,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홀로 16년 동안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사건본인은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정신지체의 심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본인은 홀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활비와 병원비, 재활치료비, 기저귀 구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 일을 해왔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현재 청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해왔던 시간강사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0. 10. 29.)

1.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0년 11월부터 2040년 12월까지 매월 20일에 월 1,250,000원씩 지급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매년 어린이날, 사건본인의 생일, 성탄절 오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협조한다.
4. 청구인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기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애 법률구조1부장